

『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5월 16일

나. 발 의 자 : 권재욱, 김낙관, 김영길, 김재우, 김춘남, 김태근, 김택호,
송용자, 안주찬, 양진오, 이선우, 최경동 의원(12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6월 7일

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권 재 욱 의원

나. 제안이유

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
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
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
- 해체자문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, 「건축물관리법」 , 「구미시 건축 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5. 17. ~ 5. 24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해체공사 시에는 소음, 진동, 분진, 해체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공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신축 공사에 비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.
- 안전이 시대의 화두가 된 현실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체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높여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